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20). / (총 23	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유 보 영		044-202-1705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재 우		044-202-1706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미 라		044-202-1790
환자병상관리팀	담 당 자	안 제 현		044-202-1797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이 중 규		044-202-2730
중환자병상확충팀	담 당 자	이 준 미		044-202-19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오 창 현		044-202-1781
생활치료센터확충팀	담 당 자	진 상 인		044-202-1782

코로LH101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등 -

코	로나바	이근	스	감염증	-19	중앙재	난안전	대책	본부 (본	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	_늘	정	세균	본부기	상 주재	로 る	부서	울청사	영상	회의실	<u>]</u> 에서
각	중앙	부	처,	17개	광역	자치딘	·체와	함께	▲주.	요 지	자체 코	로나
19	현황	및	圣 え	시사항	, ▲ધ	}역관리	상황	· 및	위험도	평가	등을	논의
하였	[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이므로, 중수본에게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숨은 전파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데다가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 방대본에게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지원 하고, 행정인력 지원은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중수본과 교육부에게 단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학생을 선발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 일부 학교의 기말시험 대비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학생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시험조차 못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명 생 친 구

- 이에 따라, 교육부에게 교육청과 협조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말고사 등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무리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2.13.~12.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49명**으로 **그** 전 주간(12.6.~12.12.)의 **661.7명**에 비해 **287.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3.3명으로 그 전 주간 (12.6.~12.12.)의 219명에 비해 94.3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22.~11.28.	11.29.~12.5.	12.6.~12.12.	12.13.~12.1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00.1명	487.7명	661.7명	949명
60세 이상	85.9명	116.3명	219명	313.3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4.3명	25.9명	27.6명	27.7명
집단 발생¹⁾ (신규 기준)	42건	54건	45건	34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4.2%	17%	22.6%	29.9% (2,047/6,837)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39.6	43.4	37.9	31.6
즉시 가용 중환자실	86개	55개	62개	38개
711710 00112	(11.28.9시기준)	(12.5.9시기준)	(12.12.9시기준)	(12.19.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평 생 친 구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689.1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82.9명**, **충청권 72.6명**, **경북권 42명**, **호남권 33.3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3.~12.1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689.1명	72.6명	33.3명	42명	82.9명	15.1명	14명
확진자 수	005.10	72.00	33.3 0	0	02.5	3	
60대 이상	220.1명	24명	16.1명	9.9명	34.4명	3.4명	5.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19.9시기준)	3개	1개	6개	4개	7개	7개	10개

- □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였다.
- 지난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134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비인두도말 PCR 진단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와 타액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 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 어제(12.19.) 44,210건을 검사하는 등 그간 **163,316건을 검사**하여, **385명의 화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 확진/검사 : 서울(246명/86,912건), 경기(108명/67,146건), 인천(31명/9,258건)
-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12.19.) 하루 약 8만 1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대규모 검사를 통해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할 계획이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 (수도권 일일 확진자) 540명^(12.7~12.13) → 687.6명^(12.14~12.20) (수도권 60세 이상 일일 확진자) 174명^(12.7~12.13) → 213명^(12.14~12.20)
-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참고로, 1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 병원은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당초 계획한 7.000병상 중 6.167병상(12.13, 기준 가용병상 2,095 + 신규 확충 4,072)을 확보하여, 1주 차에 이미 목표의 88.1%를 **달성**하였다.
- 이에 따라 확보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비율인 **병상가동률**은 지난 1주간 61.2%(12.7~12.13)에서 49.8%(12.14~12.20)로 약 11.4%p 감소하였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984병상**(확보목표 2,700개 대비 36.4%),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3병상(확보목표 300개 대비 31.0%)을 확보하여 총 3주차 목표의 1.8을 약간 상회(35.9%)하는 수준이다.
-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난 1주간 77.8%에서 77.7%로 약 **0.1%p 감소**하였으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6.7%에서 98.4%로 약 **1.7%p 증가**하였다.
- **인력**의 경우 지난 대책 발표 이후 1주간 **의사 106명, 간호사 234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거의료인력 214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여 의료현장을 지워하고 있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하여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 □ 우선,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한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 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화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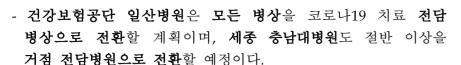








평 생 친 구



-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 들도 참여하여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다.
 -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으로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예정이다.
-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 원**(300병상기준)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
 -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 보상 기준도 상향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 □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일 이상 대기 환자가 최소화하도록 한다.
-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18.) 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 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하였다.
-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도 보강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되었다.
 - * 전문의 2명, 공보의 10명, 간호사 1명, 공무원 37명(지자체 인력 포함)
-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도 개선하였다.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함에 따라,
 -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 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또한,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기존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의료기관의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 치료센터에도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평생친구

철저히 하여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개선 사항 >

종전	
▶ 건강상태 관계없이 65세 이상 입소 불가	
▶ 증세 악화시 책임 문제로 입소 거부	=
▶ 환자배정 및 전원 비협조 발생	

개선
▶ 나이 제한 삭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입소 후 증세 악화시 전원절차 마련
▶ 환자배정 및 전원 협조 의무화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 료센터로 전원**하고,
-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만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 또한,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을** 인상하여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 파견의료인 현행수당 : (의사) 12만원,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7만원











평생친구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충북)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 강북구민운동장, 강남역 등에 **54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등 530여 명을 투입하여 총 8만 7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 주말 동안 선별검사소의 소독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찾아온 시민들이 추운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표를** 배부하는 등 검사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는 **70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총 6만 7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도(道) 누리집(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안내**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또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793병상과 생활치료센터 3,131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 1,000여 명이 읍면동 단위로 식당· 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홍보하는 등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 **충청북도**는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해 **동일집단(코호트)**









명 생 친 구

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19.)부터 도내 **고위험 취약시설*** 600여 개소의 **종사자** 1만 2천여 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 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 이와 함께 콜센터·대중교통 등 **3밀 업종 종사자**, 영구임대아파트· 기숙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6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43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8명 중가하였다.
- 어제(12.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 12월 1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950개소, ▲노래연습장 1,12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8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평 생 친 구

- 한편,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71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2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8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 불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3.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³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평생친구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홰(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괸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평생친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8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 생 친 구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7664826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포네한답증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극 6'-7'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키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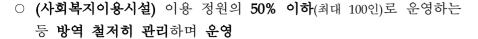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8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가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평생친구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22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